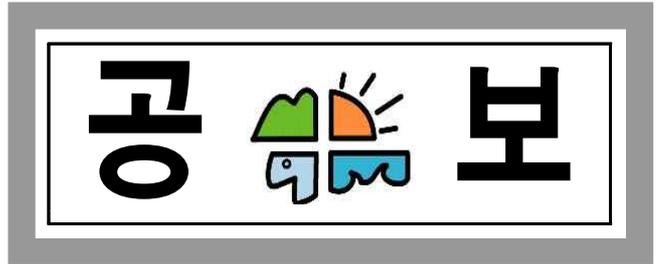
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349호 2021년 9월 27일(월)

## 조 례

- 속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..... 2
- 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..... 7
-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..... 10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1년 9월 27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2863호

### 속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속초시 빅데이터 기반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빅데이터”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(수치, 문자, 영상 등을 포함한다)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,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속초시(직속기관·사업소·동을 포함한다)와 속초시(이하

“시”라 한다)가 설립하거나 출자·출연한 공사·공단,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제5조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**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6조(빅데이터책임관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.

1.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 협의·조정·지원 등 총괄 사무
2. 빅데이터의 수집·저장·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
3.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
4. 빅데이터 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
5. 빅데이터의 수집·저장·분석·활용 단계별 보안에 관한 사무

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국장으로 한다.

**제7조(계획 수립 등)**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빅데이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
3.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
4.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5.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
6.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

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**제8조(빅데이터활용위원회 설치)**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빅데이터활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기본계획·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 변경
2.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·분석 및 점검
3.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·제도 개선
4.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9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

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

2.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3. 전문가·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시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 담당으로 한다.

**제10조(수당 등)**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(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)** 시장은 빅데이터를 수집·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

(이하 “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12조(빅데이터의 수집·관리)** 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 데이터를 생성·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빅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빅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빅데이터의 활용)**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경제·관광·교통·교육·의료·생활·복지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

2.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,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

3.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·포상 및 홍보

4. 빅데이터 활용 교육

5.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

**제14조(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)**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빅데이터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빅데이터 전문 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5조(평가 및 포상)**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법인 등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기업·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「속초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**제16조(비밀보호를 위한 조치)** 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

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빅데이터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빅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1년 9월 27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2864호

### 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속초시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시장의 책무)**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자활지원계획의 수립)**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
2.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3.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·지원계획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

**제4조(자활사업 지원)** ① 시장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자활센터의 설립·운영비용
2.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3. 국·공유재산의 무상임대
4.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

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
2. 국·공유지 우선 임대
3.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4.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

③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상시노동자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「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5조(자활기관협의체 구성)** ① 시장은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속초시 자활기관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.

**제6조(임기 및 직무)**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대표자 회의)** ① 협의체 대표자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대표자 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등 보고

2.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및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관련 사항
3.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
4.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
5.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
7. 협의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

**제8조(실무자 회의)** ① 협의체 실무자 정기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.

② 실무자 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의 점검
2.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
3. 자활대상자 사전·사후관리 방안
4.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상황 점검
5.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, 상담이력,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
6. 프로그램 부적응자, 상담 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 안 협의
7.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
8.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
9. 각 기관의 분기별 사업계획(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조정 등)

**제9조(수당 등)**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포상)** 시장은 자활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에게 「속초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1년 9월 27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2865호

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

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영농폐기물(농약용기류·농촌폐비닐) 수거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